

#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 보장은 필수입니다.

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 
학생예비군에게  
결석처리, 수시시험 0점 처리 등  
불리한 처우 안됩니다!

## 관련법

- 「예비군법」 제10조의2  
: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
- 「병역법」 제74조의3  
: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7조의3  
: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

## 처벌법

- 「예비군법」 제15조 : 벌칙
- 「병역법」 제93조의2  
: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 
직장 보장의 위반



국방민원상담센터 1577-9090 / 교육부 02-6222-6060